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영세한 어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어업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폐업지원금 액수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상한을 초과한 이상, 원고들이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폐업지원금 전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원금액 상한의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비로소 지원금액 상한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취득 ·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액수의 결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두12400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축비로 사용함은 물론 그 준공 후에도 아파트를 근로청소년에게 임대한다는 건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결정을 취소한 다음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게 된다는 내용의 취소권(철회권)을 유보하였고, 따라서 위 아파트를 근로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교부조건 위반을 사유로 보조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